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7호 2023. 11. 16.(목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95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596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597호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598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599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하동군 조례 제2600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601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하동군 조례 제2602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하동군 조례 제2603호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4
○ 하동군 조례 제2604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하동군 조례 제2605호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	32
○ 하동군 조례 제2606호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33
○ 하동군 조례 제2607호	하동군 국어 진흥 조례	36
○ 하동군 조례 제2608호	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40
○ 하동군 조례 제2609호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42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6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5
○ 하동군 규칙 제126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95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56
○ 하동군 훈령 제396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58
○ 하동군 훈령 제397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	80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9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고시	102
○ 하동군 고시 제2023-19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8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463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5
----------------------	--	-----

일 반 공 고

○ 하동군 옥종면 공고 제2023-20호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11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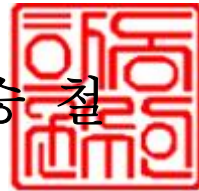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조례 제 2595 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보훈대상자 구분		등록번호	
보훈대상자		생년월일	(남/여)
수진자		생년월일	(남/여)
의료급여기관		진료기간	

진료비 지급 신청

총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신청금액

진료비 지급 계좌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청구인 주소 :

성명 : [수진자의 , (남/여)]

하동군수 귀하

제출서류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부.

* 신청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u> 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 로 한다.</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 <u>국가보훈부장관</u>----- -----.</p>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u>보훈예우수당</u>(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p> <p>1. ~ 3. (생략)</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u>국가보훈처</u>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p> <p>5. ~ 7.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금액을 월 5만원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 <u>예산의 범위</u>에서 <u>보훈예우수당</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u>국가보훈부</u>-----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 <<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96 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을 “전몰군경유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배우자 : 월 5만원”을 “배우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만원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u>국가보훈처장</u>이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제2항 및 「<u>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p>	<p>제3조(지원대상) ----- ----- ----- ----- <u>국가보훈부장관</u> ----- ----- ----- ----- ----- ----- -----.</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p> <p>가. 참전유공자 본인 및 <u>전몰군경유족</u> : 월 10만원</p> <p>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u>배우자</u> : 월 5만원</p> <p>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u>30만원</u> 지급</p> <p>3.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 ----- ----- ----- -----.</p> <p>1. -----</p> <p>가. ----- <u>전몰군경유족</u></p> <p>나. ----- <u>배우자</u></p> <p>2. ----- ----- <u>지급</u></p> <p>3.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97 호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 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 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 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칠



하동군 조례 제 2598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를 “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 「하수도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산정기준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를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을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생 략)</p> <p>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 ----- ----- ----- -----.</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p> <p>⑤ (생 략)</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물환경보전법」 -----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생 략)</p> <p>1. 오수 발생량은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p>	<p>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1. ----- 「하수도법 시행령」 -----</p>

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3 수질하수도 사용료

대상항목 : (생 략)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 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 (생 략)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수질하수도사용료 : (생 략)

-----.

별표3 수질하수도 사용료

대상항목 : (현행과 같음)

사용료 산정기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 (현행과 같음)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수질하수도사용료 :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천



하동군 조례 제 2599 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 략)</p> <p>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p> <p>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p> <p>7. (현행과 같음)</p>
<p>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 략)</p>	<p>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0 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
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한다.

제2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소상공인의 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 · 제22조 (생 략)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한다.

제2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소상공인의 날) 군수는 소

상공인에 대한 군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 제25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1 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11조(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 ----- -----.</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2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21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 .</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3 호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하동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자”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주관자인 옥외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군이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장소·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여,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는 제3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

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를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4 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운영위원회)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으로 구성한다. <u><후단 신설></u> ④ ~ ⑩ (생략)</p> <p><u>제22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전대할 수 없다.</u></p>	<p>제18조(운영위원회)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605 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6 호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하동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하동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
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포상 등) ①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
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어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조례 제 2607 호

하동군 국어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하동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하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군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제9조(지역어의 보전)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하동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8 호

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
- 2. “예비군”이란 하동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하동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09 호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은 군수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① 군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①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② 응급처치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군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자격) 응급처치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시설·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홍보)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규칙 제 1265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개정 2023. . . >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732	374	79	65	19	22	173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701	368	79	40	19	22	173
	4급 소계	5	4	1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41	19	2	4	3	1	12
	행정	4	3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5	5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3					1	2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6	2				2	2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86	101	19	7	4	5	50
	행정		8	8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3						3
	행정·세무		14	8	1			1	4
	행정·사회복지·전산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시설		16	6		1		1	8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0	18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5	2					3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6	3					3
	행정·세무·시설		7	5			2		
	행정·세무·전산·농업		6	4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3	2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통신운영		7	3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8		5				3
	행정·시설·환경		3	3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6		6				
	행정·공업·환경·시설		6	6					
	행정·농업·녹지·환경		6	2					4
	전기운영·기계운영·화공운영		3	2					1
행정·보건진료·간호·의료기술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97	99	20	10	6	9	53
	행정		19	13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행정·시설		11	4				1	6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간호		4		4				
	보건·간호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2	3	2		1	2	4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1	11
	행정·시설		13	8		1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방재안전		7	3			2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0	7				1	2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4		4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화공운영·기계운영·시설관리		3	3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83	97	33	6	3	3	41
	행정		22	14			3		5
	세무		1	1					
	사회복지		12	6				1	5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4	2	2				
	간호		9		9				
	의료기술		6		6				
	보건진료		6		6				
	환경		1	1					
	시설		15	10					5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6	6					
	운전		6	1					5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시설		12	8				1	3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농업		8	2		1			5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농업		11	9		2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6	6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6	1	5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6	2					4
	행정·농업·시설		9	5		1			3
	행정·보건·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7		4			1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89	49	4	12	3	4	17
	행정		14	7		2	2	1	2
	사회복지·시설		13	5				1	7
	환경		2	2					
	공업		4	4					
	해양수산		1	1					
	보건		3	1	2				
	운전		2						2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5	2		2			1
	행정·시설·방호		11	9		2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공업		3			3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전산·통신		4	3		1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5	2		2			1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5	3			1		1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3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연 구	연구직 계		2	1		1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6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읍·면	직 위	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직무) ① ----- <u>담당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기획행정국장은 <u>지방서기관</u> 또는 <u>지방기술서기관</u>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p> <p>가. ~ 바. (생략)</p> <p>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p> <p>가.·나. (생략)</p> <p>다. 산림녹지과장 : <u>지방행정사무관</u> 또는 지방녹지사무관</p> <p>라. (생략)</p> <p>마. 시설체육과장 : <u>지방행정사무관</u> 또는 지방시설사무관</p>	<p>제3조의2(국장·과장) ----- ----- -----.</p> <p>1. ----- <u>지방서기관</u> -----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u>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u> - -</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 <u>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u> ----- -</p>

3.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
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
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경제기업과장 :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
관

나. ~ 바. (생략)

3

-----.

가. -----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나. ~ 바. (현행과 같음)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훈령 제 395 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훈령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제2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홈페이지 별첨)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훈령 제 396 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동군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하동군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하동군에 근로를 제공하는 군 소속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 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수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군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둔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군수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및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작업의 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명예 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명예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장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근로자 대표

나. 위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

로자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담당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중 1명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위원회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로 대체되어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위원회 회의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이 의결되지 않으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
2. 안전·보건 대행업체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2. 현업업무 상시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나목과 같다.

제24조(신규 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시에는 작업 투입 전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직무 수행으로 현업업무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6조(특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근무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 목에 따른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기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사이에 24시간 이상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

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기록·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교육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30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전 부서에 알려 철저히

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영 제70조에 따라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교부받은 검사확인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안전인증)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기구·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의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한다.

제39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차량의 점검정비 적정 여부
6.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4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군이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4조(유해요인조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간 · 작업 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2.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요인 조사 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리요령을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요인발생 부서의 보건수칙) 유해 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용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보건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

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 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제1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 등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 또는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고조사 업무 담당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휴게시설 설치·운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기준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제53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54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군수는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6조(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군수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발주 공사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 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원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석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0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된 재해의 원인을 찾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에

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61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가.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한 경우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3조(위험성평가 절차) 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업무 내용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4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5조(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 최소 보존기한은 제62조에 따른 실시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장 보칙

제66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7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른 서류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6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9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훈령 제 397 호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을 “하동군 소속”으로, “추정·결정한”을 “결정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읍·면 및 의회사무과”를 “읍·면”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

6.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시평가 : 사업장의 상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

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나. 매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
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다. 매 작업일마다 제1호,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
유·주지

제7조제3호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을 파악해 감
소대책에 대한”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
- 7.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정하
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제8조(평가절차)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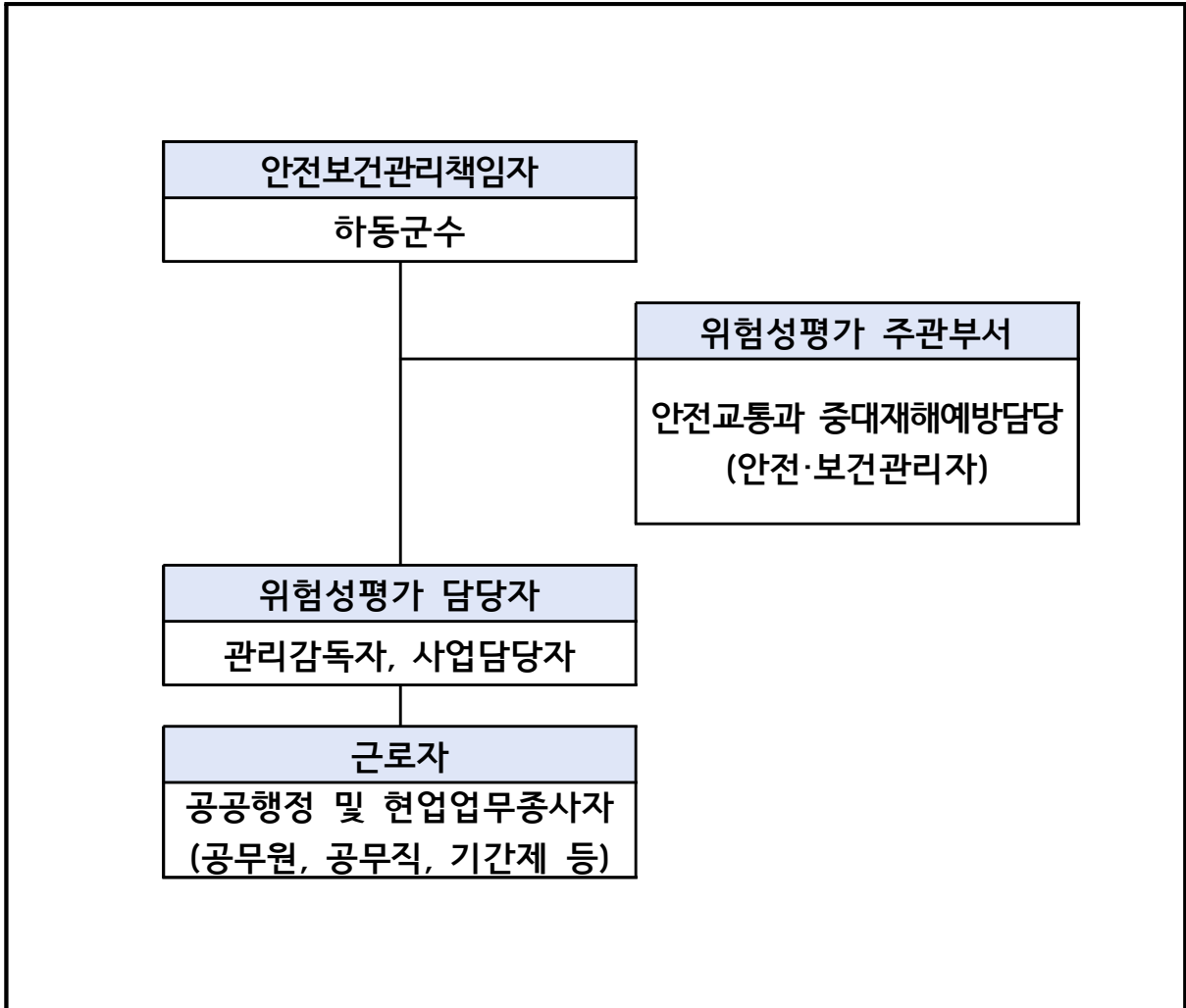
별표 1, 2, 3,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제3조 관련)



[별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4조 관련)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p><위험성평가 총괄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나.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다.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라.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2.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 3. 예산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4.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위험성평가 주관부서	<p><위험성평가 실행 관리 및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2.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3.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을 기록 4.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및 기록, 보관
위험성평가 담당자	<p><위험성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3.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4.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	<p><위험성평가 참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2.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확인 3.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4.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장소 인지 5.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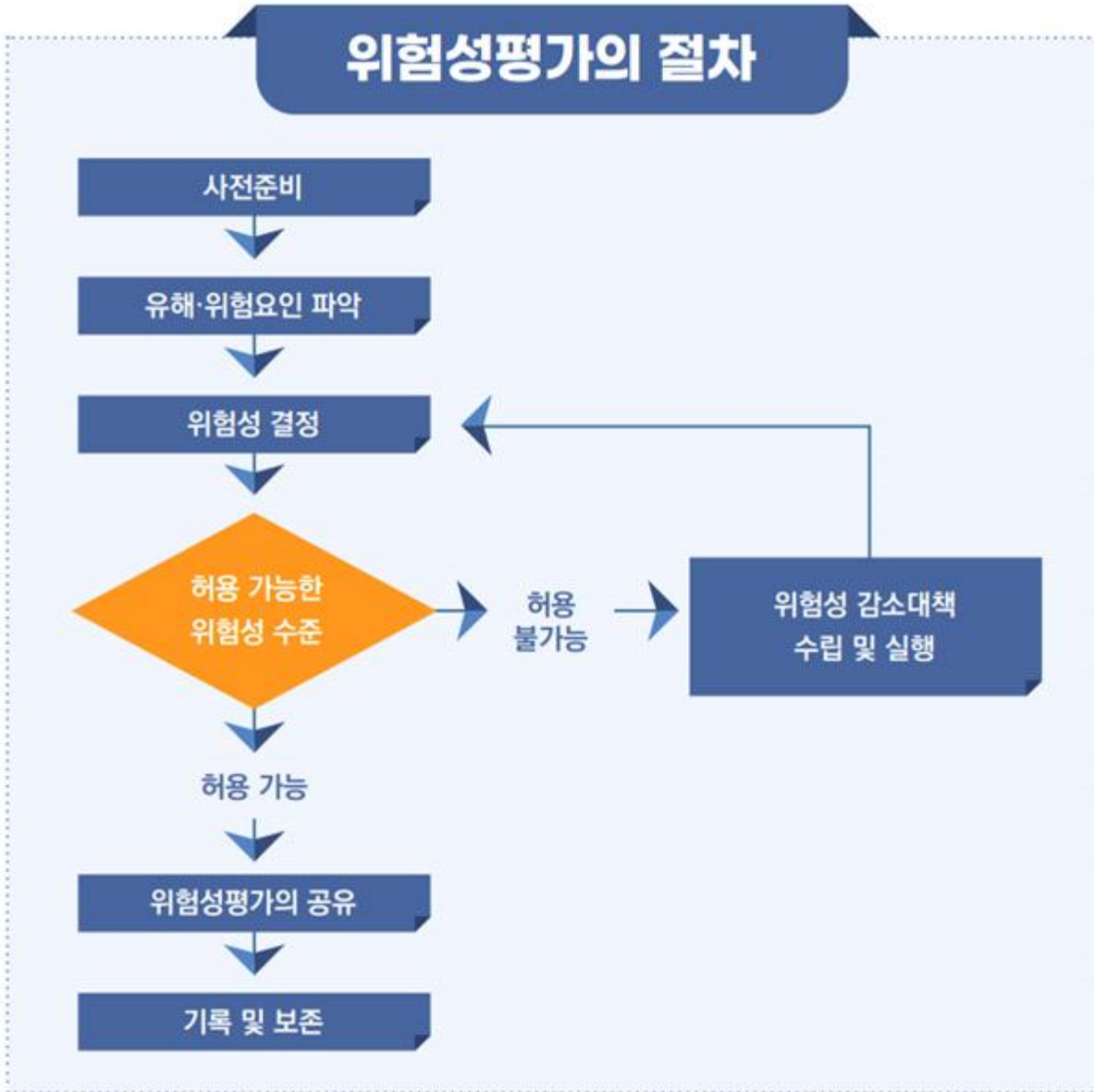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제7조 관련)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 평가방법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에 준함

[별표 4]

위험성평가 절차(제8조 관련)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로,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 규정을 작성
- 실시규정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절차, 공유방법 등이 포함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그 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어려움
-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유해·위험요인이 파악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하며, 관련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법령·지침·해설서, 사업장 재해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파악
-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정보를 파악한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필요 시 안전보건정보 활용

■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정보

-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4.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 등에 관한 정보
-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6. 작업환경측정 및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반드시 실시)
 -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 위에 나열된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반드시 포함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작업 근로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

- 1.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 포함)와 질병의 기록
- 2. 기계·설비 및 변동사항 체크
- 3. 유해·위험작업, 설비의 특이사항 및 이전 점검사항 기록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로 일하는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뻔 했던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작업 절차서, 공정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활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아래와 같이 목록화하여 작업별로 유해·위험한 것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로 작성
- 수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나열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정할 것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분류

구분	위험요인	세부요인
분류 (예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 부식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분류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기계(설비)적 요인	끼임, 위험한 표면, 기계(설비)의 낙하 등, 충돌, 넘어짐 등
2	전기적 요인	감전, 아크, 정전기, 화재/폭발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가스, 증기, 에어로졸·흠, 액체·미스트, 고체(분진), 반응성물질, 방사선, 화재/폭발위험,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병원생 미생물·바이러스 감염, 유전자 변형물질, 알러지 및 미생물, 동물,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소음, 초음파, 진동, 저압/고압, 질식위험, 반복작업, 중량물 등
6	작업환경 요인	기후/고온/한랭,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시간, 조직문화, 화상, 작업도구

• 재해유형별 분류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가설물·수목·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2	넘어짐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는 경우
3	깔림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진 경우 및 지게 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작업 중 뒤집혀진 경우
4	부딪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
5	맞음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에서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
6	무너짐	토사·적재물·구조물·건축물·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7	끼임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의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8	절단·베임·찔림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
9	감전	전기가 흐르는 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설전류(누전)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사람에게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진 경우(전기아크 화상 포함)
10	폭발·파열	폭발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발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며, 파열은 배관, 용기 등이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 폭발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11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
1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 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

13	이상온도·물체접촉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14	화학물질 누출·접촉	화학물질 누출사고(엎지르거나 튀는 경우)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15	산소결핍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16	빠짐·익사	바다, 호수, 맨홀, 정화조 등의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
17	기관 내 교통사고	기관 내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8	기관 외 교통사고	기관 외의 도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19	체육행사 등의 사고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 워크샵, 회식 등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20	폭력행위	의도 또는 불분명한 위험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1	동물상해	동물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22	기타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

● 작업상태 및 활동별 분류

연번	위험요인	세부요인
1	작업장비의 사용	부품, 기계, 차량, 화재 및 폭발 등
2	작업 실습 및 구내 설계	위험한 표면, 고소작업, 서투른 자세, 전도, 보호구, 밀폐공간 등
3	전기의 사용	전기 개폐기, 전기 설치, 전기 제어 등
4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물질 또는 위험한 시제품에 대한 노출	건강에 위험한 물질 흡입 가연성/폭발성 물질 사용, 부식성 물질 존재 등
5	물리적 요인에 대한 노출	방사선, 레이저, 소음, 초음파, 진동 등
6	생물학적으로인에 대한 노출	미생물 감염, 알러지 유무 등
7	환경요인 및 작업 기후	부적절한 조명, 온도/습도/환기 등
8	작업장소 및 인적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안전한 작업 절차, 개인보호구 등
9	심리적 요인	일의 가혹성, 모호한 역할 등
10	작업조직	교대/야간근무, 재해 응급조치 등
11	기타요인	동물/식물 작업, 기후/기압 등

3단계 위험성 결정

■ 주요내용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마련해 둔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전준비 시 마련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아래의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1. 빈도와 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의 3단계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법

○ 빈도·강도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크기(수준)을 산출하고, 이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TIP 빈도·강도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② 위험성 결정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

-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각 항목에 대해 “O”, “X”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 판단

TIP : 체크리스트 방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안전조치 실시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로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TIP :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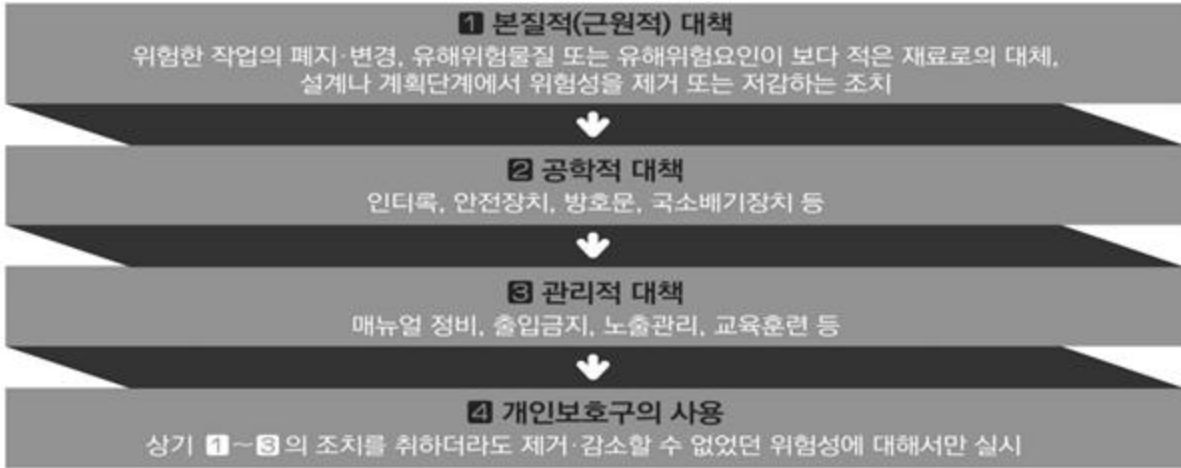
- 단계적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실시하는 방법

TIP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평가·결정	안전조치 실시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고려사항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 등 본질적 대책

-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감소대책 수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음의 감소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함

■ 제거·대체 예시

- 인화성 물질을 대체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을 제거
- 급성독성 물질을 일반 물질로 대체하여 건강장해 위험을 낮춤
-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를 공압식으로 교체하여 감전 위험을 제거
- 소음이 심한 기계를 차폐형으로 교체하여 소음 저감
- 높은 건물의 외벽 청소작업을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 등

○ 위험을 격리 또는 방호하는 공학적 대책

-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 장비, 기술 및 공학적 조치 고려
-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장비, 도구, 설비의 개선은 작업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전체 근로자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

■ 공학적 대책 예시

- 끼임 위험이 있는 회전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중량물 이동 설비 도입
- X선 장비 등 위험 공정을 완전히 격리하여 배치
- 작업에 적절한 조명 설비 설치

○ 절차서 마련, 작업절차 교육 등 관리적 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절차서를 마련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추가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지 고려
- 관리적 대책은 비교적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효율적임

■ 관리적 대책 예시

- 설비를 안전하게 작동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절차와 지침 마련
-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사용설명서, 경고표지,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등)
- 작업장, 설비 재치의 조정 또는 재설계(지게차 이동 경로 조정 등)
- 위험성평가 교육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 교육 제공

○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개인보호구는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최종 위험관리 대책 중 하나이며, 이미 시행한 다른 위험관리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다른 개선대책의 대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인보호구 사용 대책 예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고압 활선 작업 시 절연보호구 착용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 연마 작업 중 방진마스크 착용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및 기록

○ 위험성평가의 공유

- 게시 및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
-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그 기록을 보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 축적에 기여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을 권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하동군</u>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u>추정·결정한</u>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하동군 소속</u> ----- -- <u>결정한</u>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모든 사업장(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u>의회사무과</u> 소속 사업장을 말한다)에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u>읍·면</u> ----- -----.</p>
<p>제5조(평가대상) 근로자(수급, 수탁인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5조(평가대상)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u></p> <p>6. <u>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u></p>
<p>제6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6조(실시시기) ----- ----- -----.</p> <p>1. ~ 3. (현행과 같음)</p>

<신 설>

4. 상시평가 : 사업장의 상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나. 매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다. 매 작업일마다 제1호,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

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을 파악해 감소대책에 대한 수립·실행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5.·6. (생략)

<신설>

제8조(평가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

1.·2. (현행과 같음)

3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대 ----- 책

4.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

5.·6. (현행과 같음)

7.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제8조(평가절차) -----
- 별표 4와 -----.

하동군 고시 제2023-196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을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08.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0
2. 허가연월일 : 2023. 11. 08.
3. 점·사용의 목적 :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가설건축물 존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08-37(구), 34㎡
5. 점·사용의 기간 : 2023.11.08. ~ 2028.11.07.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정승*
7. 점·사용 변경사항 : 점용 기간 연장

하동군 고시 제2023 - 198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67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88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1.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건물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약양면 미점리 592-11	경상남도 하동군 약양면 개치미동길 67	20231115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02-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산서원길 28-1	20231115	옥산서원이 위치한다 하여 옥산서원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5-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70-6	20231115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5-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70-4	20231115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4-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647	20231115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종이리 6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97-3	20231115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업무구분	종전주소	효력발생일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188	20231115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공고 제2023 - 1463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근거법령 및 인용 조문 개정
3. 주요 내용 : 근거법령 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 행정과 전화 880-2163, FAX 880-2159, e-mail) korapa2k@korea.kr 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를 “주민자치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읍·면에 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하동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읍·면 ----- ----- -----</p>
<p>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주민총회) ① (생략)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12조(주민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관한사항</p>	<p>4. 읍·면에 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③ ~ ⑥ (생략)</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동군 옥종면 공고 제 2023 - 20 호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와 과세대상 누락물건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옥종면장

1 채용내용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1명	옥종면 민원부서	-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 (사진등록, 누락분 등록 등) - 지방세업무 보조	2023.12.1. ~ 2024.2.29.	예산의 범위내 조정가능

2 응시자격

- 성 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지역조건 : 옥종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전산 업무 가능자, 운전면허 소지자,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3 채용 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합계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일 점수의 경우 우대조건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취소 되었을 경우 차순위자 합격처리
- ※ 적격자가 없을 시 인원이 미달되어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1.(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옥종면사무소 민원부서
 - ※ **접수기간 종료일 근무시간(18:00) 도착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각1부(붙임양식)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1. 22.(수) - 개별통지
- 면 접 시 험 : 2023. 11. 24.(금) - 시간 및 장소 합격자 별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1. 27.(월) - 개별통지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임금 및 근로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보 수 : 일급 76,960원, 주차·월차수당 지급(2023년도 노임단가 기준)
 - ※ 최저임금 변동시 반영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근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 무 지 : 옥종면사무소 민원부서
- 기타 근무조건은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8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면접전형 당일 면접 시간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종면 민원부서(☎ 880-6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옥종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11월 일 성명 (인)

옥종면장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 응시원서 』 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생년월일 :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23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아.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 력 서

구분	응시 분야	
내용	개별주택특성조사	

	성 명	(한문)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 교 명	전 공	졸업 구분	소재지	
						졸업 / 재학	
						졸업 / 재학 / 휴학	
						졸업 / 재학 / 휴학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근무처	직위	동거	외 국 어	언 어	능 렷	
									영 어	상 중 하
									공인시험	점 수

O A 능 렷		상 중 하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 류	등급
		상 중 하		. .		
		상 중 하		. .		
		상 중 하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옥종면사무소 민원부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채용 시험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 진위여부를 위한 검증과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3년 11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옥종면장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재정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